

◎ 고등교육 개요

01. 대한민국학도호국단 규정
02. 대학설치기준령
03. 대학정비에 관한 건
04. 실업고등전문학교 설치계획(안)(제80회)
05. 대학학생정원령(안)(제106회)
06. 대학입학예비고사령
07. 한국방송통신대학설치령(안)
08. 대학의 새마을교육 추진계획(문교부)
09. 해외유학제도의 개선을 위한 조사보고
10. 전문대학설치기준령(안)(제553호)
11. 대학학생정원조정(1981학년도)
12. 대학입학학력고사령안(제740호)
13. 대학교육협의회 법제화 건의 검토 보고
14. 고등교육법(제5439호)
15.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 추진 기본계획 통보
16. 지식기반사회를 선도하는 '두뇌한국21'(Brain Korea21)사업

고등교육 개요

한국의 고등교육은 눈부신 성장을 거듭하여, 1945년 2,382명에 불과했던 고등교육 인구는 1970년대 말과 1990년대에 비약적으로 확대되어 2000년에 300만 명을 넘어서게 되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초등교육, 중등교육, 고등교육이 순차적으로 확대되었고, 한국의 고등교육은 보편화 단계에 진입하였다.

이 장에서는 고등교육 정책의 변천과정을 고등교육의 기반 조성(1945~1960년), 고등교육의 정비와 개혁(1961~1979년), 고등교육의 확충과 개혁(1980년 이후)으로 구분하여 주요 사실들을 제시하도록 한다.

1) 고등교육의 기반 조성(1945~1960년)

1945년 광복과 더불어 우리나라 고등교육 정책은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는 모델로 변모되었다. 일제강점기에서 대학과 전문학교로 이원화되어 있었던 고등교육의 체제를 4년제 대학으로 제도화하였고, 학기제도 3학기제에서 2학기제로 전환하였다. 대학은 단과대학과 종합대학으로 구분하고, 4년제 대학의 졸업학점을 180점 이상으로 하였으며, 일반 대학에 1년 이상의 대학원 과정을 설치하도록 규정하였다. 미군정 하에서는 개방적 고등교육 정책으로 인해 수많은 대학이 설치·인가되었다. 광복 당시 19개의 고등교육기관이 있었으나 1948년 정부수립 당시에는 종합대학 4개교, 단과대학 23개교 등 모두 42개교에 달하게 되었다.

1949년 「교육법」 제정을 통해 6-3-3-4제의 기간학제가 정립되었고, 고등교육제도는 1950년 개정으로 다음과 같이 조직되었다.

- 대학 : 4년 또는 6년제(의치과대학)
- 사범대학 : 중등교원 양성 목적, 2년 또는 4년제
- 초급대학 : 2년제 또는 4년제
- 각종학교 : 위 학교와 유사한 교육기관

오늘날 고등교육기관의 주종을 이루는 대학과 사범대학, 전문대학의 전신인 초급대학은 1950년에 제도화되어 기본 형태가 유지되고 있다. 이 시기에 특기할만한 사실은 학도호국단의 조직과 운영이다. 학도호국단은 민족의식을 고취하고 체력을 단련한다는 명목으로 1949년 4월 20일 발족되었다. 대학을 포함하여 중학교 이상 각급학교의 학생과 교직원을 단원으로 전국적으로 조직되었고, 1960년에 폐지되었다가 1975년 부활을 거쳐 1985년에 완전히 사라졌다. 이것은 남북분단의 특수한 현실 속에서 국가적으로 운영된 학생조직 역사의 단면을 보여준다.

1950년의 6.25전쟁은 고등교육에 심대한 타격을 주었으나 1951년 5월 「대학교육에 관한 전시조치령」에 의하여 전시연합대학이 부산, 광주, 전주, 대전 등에 설치되어 고등교육의 지방 분산과 새로운 발전의 계기가 마련되었다. 1952년에는 전시연합대학이 폐쇄되면서 지방 국립대학이 발족하였다. 1952년 10월에 경북대학교, 전북대학교, 전남대학교가, 1953년에는 부산대학교, 충남대학교, 충북대학교(전신은 청주초급농과대학)가, 1955년에는 제주대학이 설립되었다. 또한 16개교의 사립대학이 신설되거나 승격 인가되어 대학 붐을 이루었다.

그러나 1955년에 「대학설치기준령」이 공포되면서 대학 신설은 다소 억제되었다. 시설과 교원 등 대학의 설치 기준을 법령으로 제시함에 따라 대학의 질 관리 노력이 시작되었고 대학 설립 인가가 엄격하게 진행되었다.

이 시기는 고등교육의 법적 기틀이 확립되고 고등교육기관이 팽창하면서 고등교육의 기반이 조성되었다. 1950년대 중반까지 개방적, 자유방임적 고등교육 정책은 고등교육의 양적 팽창의 직접적인 요인이 되었고 부실 대학이 출현하게 되어 이후 고등교육에 대한 통제정책이 강화되는 근거로 작용하였다.

2) 고등교육의 정비와 개혁(1961~1979년)

1960년 4.19 혁명으로 학도호국단이 해체되는 등 대학가의 자율적, 민주적 분위기가 고양되어 갔으나, 1961년 5.16 군사정변 후 정부가 대학정비를 단행하면서 고등교육 정책은 대전환을 이루게 되었다. 1961년에 공포된 「교육에 관한 임시특례법」에 의

하여 대학통제정책이 강화되었고, 대학의 정원 감축, 학과의 폐지를 포함하는 광범위한 대학정비가 단행되었다. 「대학정비에 관한 건」, 「사립대학정비에 관한 건」이 발표되고 「학교정비기준령」이 제정되는 등 대학교육 정상화를 위한 명목으로 학교 정비가 추진되었으나, 일부 대학의 폐지와 학과 및 학생 감축 계획에 그치고 대학가의 혼란만 가중시켰다.

1962년에는 ‘대학정비안 수정에 관한 건’이 발표되는 등 대학정비조치가 조정되어 대부분 백지화되었다. 그 결과 산업기술인력의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5년제 실업고등전문학교가 창설되었고, 초등교사 양성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해 기존 사범학교를 초급대학으로 승격·개편하여 교육대학으로 발족시켰다. 1964년에 이르러 대학정비는 원상태로 환원되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고등교육기관이 설립되었다.

1966년부터 시행된 「대학학생정원령」과 학위등록제는 대학의 양적 팽창에 제동을 걸기 위한 조치였다. 그러나 일부 사립대학은 「교육법」 제114조 “대학에는 공개강좌를 둘 수 있으며 청강생을 받을 수 있다”는 조항을 악용하여 현실적으로 정원정책은 지켜지지 않았다. 1968년 11월에는 「대학입학예비고사령」이 공포되었고, 대학입학 희망자의 대학수학능력을 측정하여 입학적격자를 선발하고 대학의 정원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고자 1969년부터 대학입학예비고사가 실시되었다. 한편, 통제의 강화와 함께 조성 정책도 병행되었는데, 학술연구조성비의 지급, 교육차관에 의한 이공계 및 사범계 대학의 시설 설비 지원, 학생 장학금의 지급 증대 등이 그 예다.

1960년대가 대학의 양적 팽창에 대한 정비와 통제의 성격이 강했다면,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고등교육 개혁의 시기에 접어들었다. 1950~1960년대에 초등과 중등교육의 기반이 어느 정도 마련되자 그 다음 단계인 고등교육에 정책적 관심이 커졌고, 경제성장과 산업 수요를 위한 고등교육의 질적 변화를 도모하기 시작한 것이다.

새로운 형태의 대표적인 대학정책은 실험대학에 의한 대학개혁이다. 1973년에 시작된 실험대학에서는 140학점으로 졸업학점의 감축, 계열별·단대별 학생 모집, 부전공제의 도입, 능력별 졸업제도, 복수전공제 등이 실시되었다. 1974년부터는 대학의 특성화가 추진되어 대학 간의 역할과 기능의 분담, 특성화 프로그램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졌다. 실험대학은 개혁 의지와 능력이 있는 시범대학으로부터 시작하여 점차 확대 적용한다는 취지로 시작되었다는 점에서 1960년대의 획일적, 강제적 개혁과는 대비된다.

한편, 직업교육을 위한 고등교육기관으로 실업고등전문학교가 1970년부터 2년제 전문학교로 개편되었고, 1979년에는 초급대학과 전문학교를 일원화하여 전문대학이 발족되었다. 그리고 우리나라 최초의 원격교육기관으로서 한국방송통신대학이 1972년에 개교되어 성인과 직장인에게 방송과 통신에 의한 고등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시작하였다. 1979년에는 「해외유학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 국비유학제도를 신설하여 해외유학 제도를 확대하였다.

3) 고등교육의 확충과 개혁(1980년 이후)

1980년대 들어와 제5공화국 정부가 추진한 1980년의 ‘7.30 교육개혁’에는 대학 본고사의 폐지와 고교 내신제의 도입, 대학 졸업정원제의 실시, 방송통신대와 교육대학의 4년제 승격 등이 포함되었다. 그 전까지도 꾸준히 고등교육 인구가 팽창하였지만, 대학의 입학정원제가 졸업정원제로 바뀌면서 고등교육 인구는 획기적으로 증가하였다. 이는 고등교육의 대중화, 과열과의 해소, 재수생 감소 등의 긍정적 측면도 있었지만, 고등교육의 질 저하라는 문제를 가져왔고 다시 입학정원제로 환원되었다.

1981년에는 「교육법」 개정을 통하여 교육대학을 연차적으로 4년제로 개편하였고, 초급대학 과정의 방송통신대학을 5년제로 개편하는 조치를 단행하였다. 1982년에는 산학협력을 위하여 개방대학이 설치되었고, 학술진흥재단과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설치되어 학술활동의 지원, 학술정보의 교환, 국제교육의 강화와 대학평가, 대학 간 협력 등의 사업을 실시하였다. 대학입학 전형에 있어서는 대학입학예비고사가 폐지되고 1982년부터 대학입학학력고사가 도입되어 고교내신 성적과 함께 중요한 전형 요소가 되었다. 1985년에는 종합적인 교원양성기관으로 한국교원대학교를 신설하였다.

제6공화국 정부가 출범한 1980년대 후반부터는 ‘대학의 자율화’가 중요한 정책으로 등장하여 납입금, 학생정원, 학생선발 등의 분야에서 자율화가 추진되었다. 1990년대

에는 고등교육 분야가 교육개혁의 주요 테마로 자리 잡았다. 교수에 의한 총장직선제가 도입되어 대학조직의 자율화를 도모하였고, 대학평가가 학과평가부터 시작되어 대학의 질 관리 노력이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제5, 6공화국 시기는 국민정신교육의 강화를 중시하면서 학원안정대책에 고등교육 정책의 역점이 두어졌으나 이후 정부에서는 이러한 정책이 사라지게 되었다.

1995년 '5.31 교육개혁'은 고등교육 정책에 있어서 큰 전환의 기점이 되었다. 1990년대 중후반 문민정부 고등교육 정책의 주제는 '대학의 다양화와 특성화'였다. 특히 「대학설치기준령」과 「전문대학설치기준령」, 「대학학생정원령」을 폐지하고 「대학설립·운영규정」을 제정하면서 대학설립 준칙주의로 전환하였다. 대학 설립이 대폭 자율화되어 새로운 사회적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었으나, 대학이 양적으로 팽창하고 부실 대학이 발생하는 문제가 나타나는 시발점이 되었다. 한국 고등교육기관의 양적 변화 추이는 다음과 같다.

【표 1】 고등교육기관의 양적 변화 추이

연도	학교 수(개)	학과 수(개)	학생 수(명)
1945	19	-	7,819
1950	55	-	11,358
1960	85	-	101,014
1970	232	1,120	201,436
1980	358	2,575	647,505
1990	568	4,009	1,691,681
1997	950	6,025	2,792,410

* 주 : 전문대학, 교육대학, 대학, 개방대학, 방송통신대학, 각종학교, 대학원 등 모든 고등교육기관을 포함함
학과 수는 대학의 전계열 전체 학과 수를 나타냄

* 출처 : 교육부, 「교육50년사」, 1997

1997년 「고등교육법」의 제정은 새롭게 고등교육 체계를 정비하고 규정하는 의미가 있었다. 고등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의 종류는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통신대학 및 방송통신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로 규정되었다.

문민정부는 5.31 교육개혁을 추진하면서 재정지원을 개혁의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하였다. 이 시기에는 국·사립대학 자구노력 지원(1993~2003년), 교육개혁 우수대학 지원(1996~2002년) 등의 재정지원 사업을 통해 개혁 드라이브에 박차를 가하였고, 지방공과대학 중점지원(1996~1998년), 우수대학원 중점지원(1995~1999년), 국제전문인력 양성지원(1996~2000년) 사업을 통해 대학의 다양화와 특성화 사업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재정지원 정책은 외부 전문평가단을 구성하여 객관적인 평가와 심의를 제도화했고, 공개된 평가지표에 맞추어 대학 스스로 자구노력을 할 수 밖에 없다는 공감대를 조성하여 대학 간 경쟁을 불러왔다.

2000년을 전후한 국민의 정부 고등교육 정책은 기본적으로 문민정부가 추진한 5.31 교육개혁(안)을 바탕으로 하였다. 국민의 정부가 대표적으로 추진한 고등교육 정책은 '두뇌한국 21(BK 21)' 사업이었다. 1999년부터 2005년의 7년 간(1단계) 매년 2000억 원씩 총 1조 4천억 원을 투자하는 대규모 국책사업은 정부수립 이후 최초의 사업이었고, 참여정부를 지나 2단계 사업, 그리고 현재의 BK21 플러스 사업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를 계기로 우수대학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SCI 논문 게재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어 논문 수가 괄목할 만큼 늘어났다. 국민의 정부는 교육부의 명칭을 교육인적자원부로 변경할 정도로 '인적자원개발' 정책을 전면으로 내세웠다는 점 또한 특징적이었다.

대한민국학도호국단 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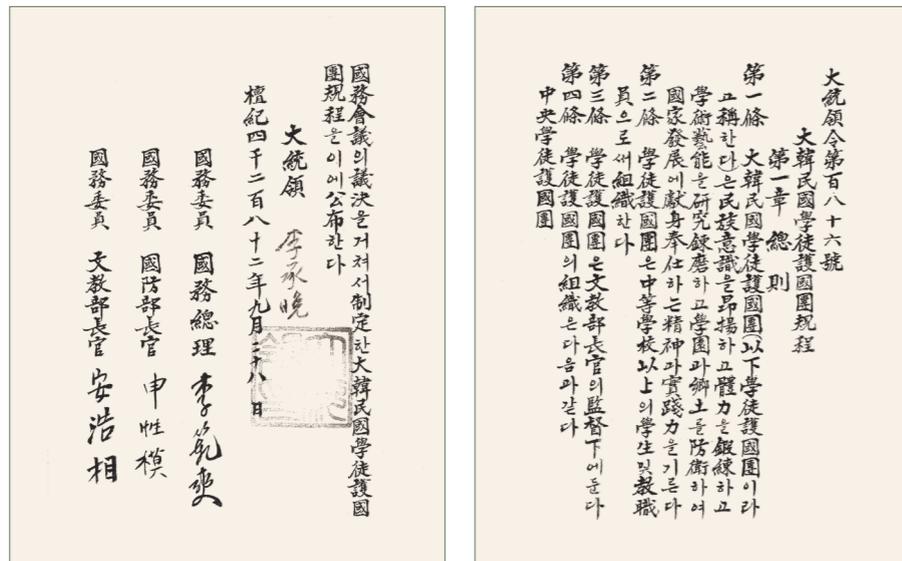
관리번호 : 1A00614174532694

쪽 수 : 13

생산년도 : 1949

생산기관 : 법제처

「대한민국학도호국단 규정」은 중등학교 및 대학의 학생과 교직원으로 구성된 조직에 대한 규정으로 1949년 9월 28일 대통령령 제186호로 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었다. 이 규정은 5장 전문 27개 조항과 부칙으로 이루어졌다. 「대한민국학도호국단 규정」은 이후 세 차례 개정되었다가, 1960년에 폐지 되었다.



【그림 1】 <대한민국학도호국단 규정> 표지 및 내용 (1A00614174532694, 16,688쪽, 16,689쪽)

초대 문교부 장관(1948. 8. 3~1950. 5. 3) 안호상은 일민주의(一民主義)를 내걸고, 흥익인간의 이념과 연결한 ‘민주주의 민족교육’, ‘일민주의사상’ 등을 제창하였다. 궁극적으로는 한국 민족의 주체성 확립에 교육의 목적을 두었는데, 국민 정신의 통합과 반공 정신의 확립, 1인1기 교육의 제창도 그러한 맥락 속에서 나왔고, ‘대한민국학도

호국단’(이하 학도호국단)이라는 학생조직의 결성도 이와 맥을 같이 하였다. 문교부는 1949년 1월 23일 「학도호국단 조직요령」을 공포하여 중등학교는 같은 해 2월 중에, 대학은 3, 4월 중에 그 결성을 완료하였으며, 4월 22일 중앙학도호국단이 결성되었다. 1949년 9월 28일 대통령령 제186호로 「대한민국학도호국단 규정」이 공포된 것은 제도적 완비를 의미한다.

「대한민국학도호국단 규정」의 제1조에서 “학도호국단은 민족의식을 양양하고 체력을 단련하고 학술예능을 연구연마하고 학원과 향토를 방위하여 국가발전에 헌신 봉사하는 정신과 실천력을 기른다”고 목적을 밝히고 있다. 학도호국단은 중등학교이상의 학생 및 교직원으로 조직하고, 문교부 장관의 감독 하에 두도록 하였다. 학도호국단의 조직은 중앙학도호국단과 시·도와 부·군·도 학도호국단, 학교 학도호국대로 하고, 대학(교) 학도호국대는 중앙학도호국단에 직속케 하였다. 중앙학도호국단의 총재는 대통령을 본대하고 부총재는 부통령과 국무총리를 추대하며, 단장을 문교부 장관으로 하였다.

학도호국단의 활동에 대해서는 명시하지 않았으나, 학도호국단 사무국의 부서에 대한 규정(제23조)에서 단체훈련, 단체작업 및 체력단련(훈련부), 학술, 예능, 지도이념의 연구와 발표, 기관지 기타 간행물의 발행 및 문화의 진흥(문화부), 시국에 관한 연구와 보도, 강연회, 웅변대회, 영화회, 자기비판회, 행동비판회 및 기타선전(선전부), 사찰망의 조직 및 사찰(감찰부)을 명시하여 그 활동을 유추할 수 있다. 또한 제25조에 ‘학도호국단에 소속하지 않은 학생단체를 조직코저 할 때에는 문교부 장관의 인가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여 사실상 유일하게 허가된 학생단체로 하였다.

학도호국단은 관료체제 속에서 점차 정치세력화, 어용기관화 되었고, 1960년 4.19 혁명 이후 학생들 간에 학생 자치 활동에 대한 요구가 커지자 1960년 5월 10일에 대통령령 제1573호로 「대한민국학도호국단 규정 폐지에 관한 건」을 공포하였다. 학도호국단이 해산됨에 따라, 문교부는 각급 학교장 책임 하에 「교육과정시간배당령」에 의거하여 특별활동 과정을 이행하도록 지시하였고, 대학에는 학생회가 조직되었다.

그러나 1969년 11월 29일부터 고교 이상 남학생을 대상으로 군사교육이 재개되었고, 1970년 7월 28일부터는 여고생과 교육대학 여학생을 대상으로 간호학 위주의 군사훈련 실시 계획이 발표되었다. 1975년 5월 21일에 「학도호국단설치령」이 제정되어 사실상 학도호국단이 부활되고 학생군사교육이 강화되었다. 이후 1985년 1월 25일

학생자치기구가 부활하면서 학도호국단이 사실상 폐지의 길에 접어들었고, 같은 해 3월 6일 고교 학도호국단이 폐지되고 총학생회가 부활하였다. 제1공화국 때 대중동원의 기구였던 학도호국단과 달리, 이 시기에는 비정치적인 정체성을 수립하고 학내 활동에 치중했다는 특징을 보였다는 평가를 받는다.¹⁾

학도호국단은 1949년부터 1960년까지, 그리고 1975년부터 1985년까지 중등학교와 대학의 학생조직으로 운영되었고, 정치적 변동과 함께 폐지와 부활, 폐지를 반복하면서 역사 속에서 완전히 사라졌다.



「대학설치기준령」은 1955년 7월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대통령령 제1063호로 1955년 8월 4일 제정되었고 같은 날 시행되었다. 이 자료는 국무회의 의결 글, 공포한다는 글, 법령, 심의경과표로 구성되었다. 이 법령은 1955년에 처음 제정되어 수차례 개정되었고, 1996년 「대학설립·운영규정」의 제정에 따라 폐지되었다.



【그림 2】 <대학설치기준령> 표지 및 내용 (1A00614174534037, 25,592쪽, 25,593쪽)

광복 후 1954년까지 한국의 고등교육은 크게 팽창하였다. 광복 당시 고등교육기관은 19개였으나 1950년에는 42개교로 늘어났고, 1955년까지 7개 지방 국립대학이 설립되고 16개 사립대학이 설립·승격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학의 설치 기준을 법령으로 제시하게 된 것이 「대학설치기준령」이다. 법령은 5장(총칙, 교원배치기준, 시설기

1) 문상석, 「학도호국단의 경험과 기억 : 탈정치화와 자기정당화」, 담론 201, 15(3), 2012, 29~58쪽

준, 자산 및 경비, 대학조사위원회) 전문 19개 조항과 부칙 3개 조항으로 이루어졌다.

제1조에서 대학(사범대학 포함)의 설치에 있어서는 국립, 공립, 사립을 막론하고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본령의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제2조에서는 대학의 설립인가(국립, 공립에 있어서는 개교조치)에 있어서 본령의 기준에 의하여 교지, 체육장, 농장, 연습림, 어장, 약초원 등의 지적시설의 전부와 건물시설의 3분지 1(초급대학과 2년제 사범대학은 2분지 1) 이상이 건설되고 개교비 및 그 편제완성연도까지에 시설비의 전부를 완수할 수 있는 재원 또는 경비(국립, 공립에 있어서는 계속비에산)와 초년도에 필요한 교원이 확보되어야 하고, 대학의 학과증설 또는 학생정원의 증가의 경우에는 그 증설 또는 증가분에 관하여 전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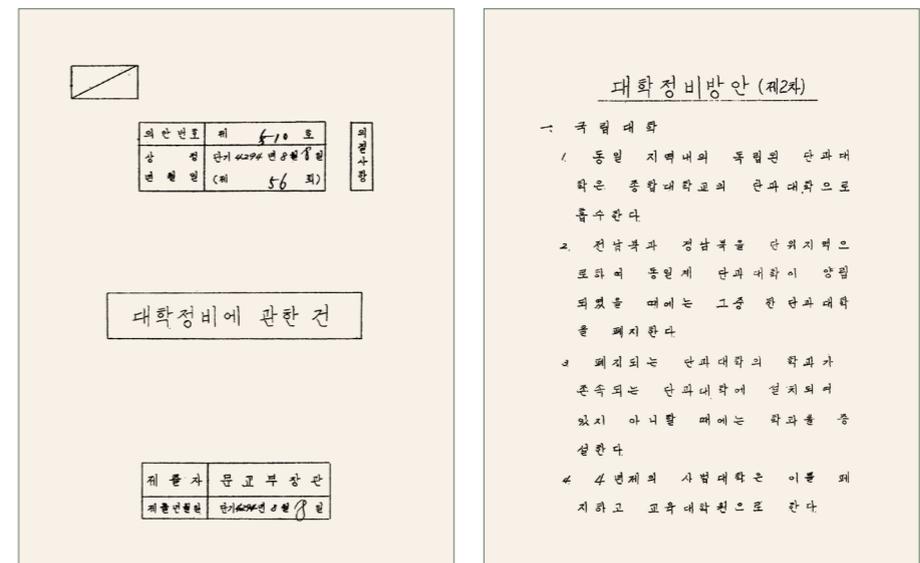
주요 내용으로는 교원의 배치기준, 교지, 교사, 체육장, 부속시설, 도서 등 시설의 기준, 사립대학의 자산 및 경비, 대학조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학과당 학생정원이 160명 이하인 경우 3학과인 때에는 26인 이상을 둔, 교지의 기준평수는 그 경내에 건축되는 건물 총평수의 5배 이상으로 함, 학생 1인에 대하여 30권 이상의 도서를 비치하되 1학과당 5천권 이상이 되어야 함, 각 기준의 적합여부를 조사심의회하기 위하여 문교부에 대학조사위원회를 둔 등이다.

1968년에 대학조사위원회를 폐지하고 1970년에 대학시설조사위원회를 신설하였다가 1980년에 폐지하였다. 1982년에는 7.30 교육정상화조치에 따라 대학생 수의 급증으로 이를 수용할 수 있는 대학시설이 부족한 실정이나 도시에 있는 기존 대학의 경우 교지의 확장이 어려운 형편이므로 이미 확보된 교지에 학생수용시설을 확충할 수 있도록 교지의 기준 면적을 완화하였고, 전반적으로 시설 기준을 완화하였다. 1988년에는 대학의 연구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연구시설의 기준면적을 정하고 대학에 기숙사를 필수적으로 두도록 하였다.

「대학설치기준령」은 1996년에 대학의 설립목적과 특성에 따라 일정한 설립기준을 충족하면 특성화된 다양한 대학을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도록 한 「대학설립·운영규정」의 제정에 따라 폐지되었다.



〈대학정비에 관한 건〉은 1961년 8월 18일 문교부 장관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510호의 의안이다. 의결주문과 제안이유, 본 건의 주요 내용에 이어 대학정비방안(제2차), 국립대학의 정비절차, 공립대학 정비구체(안), 국립대학교정비안으로 구성되었다. 사립대학에 대한 것은 '사립대학정비에 관한 건'으로 별도로 존재하고, 1962년에 '대학정비안 수정에 관한 건'이 발표되었다.



【그림 3】 〈대학정비에 관한 건〉 표지 및 내용 (BA0085216, 443쪽, 445쪽)

국가재건최고회의는 「교육에 관한 임시특례법」을 공포한 직후, 우선적으로 대학정비를 시행함과 동시에 「학교정비기준령」의 제정에 착수하였다. 이미 시행한 대학정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또한 향후 시행할 각급 학교의 통폐합에 관한 기준을 마련

하고자 한 것이다.

제안 이유는 “양적으로 팽창된 대학을 정비하여 제반 폐해를 시정하고 국가적인 부문별 인적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조정하며 나아가서는 대학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여 건실한 발전을 기하고자 함”으로 밝히고 있다.

‘대학정비방안(2차)’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국립대학의 경우, ①동일 지역 내의 독립된 단과대학은 종합대학교의 단과대학으로 흡수, ②전남북과 경남북을 단위 지역으로 하여 동일계 단과대학이 양립된 경우 그 중 한 단과대학 폐지, ③폐지되는 단과대학의 학과가 존속되는 단과대학에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학과 증설, ④4년제의 사범대학을 폐지하고 교육대학원으로 함, ⑤동 대학교 내에 설치된 단과대학 중 교육내용이 유사한 단과대학이 2개 이상 있는 경우 통합, ⑥종합대학교의 문리과대학은 사범대학의 폐지와 교육대학원의 신설 등을 고려하여 폐지하지 않고 설치학과는 증설 또는 폐과, ⑦폐지되는 대학 또는 폐과에 따르는 학생 정원은 원칙적으로 감축, ⑧국가적인 인적 수요를 감안하여 학과별로 학생 정원을 증원 또는 감원, ⑨설치학과 중 내용이 유사한 학과 통합 등이다.

또한 공립대학은 설립자인 도지사 의견을 존중하여 가능한 국립대학으로 흡수하고, 정비는 국립대학에 따르되 학생 정원을 대폭 감축하며, 사립대학은 국가적인 부문별 인적수요를 감안하여 각 대학별 학과별로 감축(안)을 작성하고 대학의 총학장 또는 이사장과 협의하여 결정하며, 「대학설치기준령」에 규정된 5개 사항의 기준에 미달되는 대학은 학생 정원을 감축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국립대학의 정비절차’에서는 단기 4295학년도 이후부터는 정비 후의 대학별·학과별 학생 정원에 따라 모집하고, 각 대학별 정비 후의 조치를 제시하였다. ‘공립대학 정비 구체(안)’에서는 서울농업대학, 진주농과대학을 제외한 충남대학교, 충북대학, 제주대학은 국립으로 이관하고, 충남대와 충북대를 병합하여 충청대학교로 한다고 하였다.

국립대학교 정비안에 의한 학생 정원은 다음 표로 제시되었다.

【표 2】국립대학 정비안에 의한 학생 정원

	단과대학수			학과수			학생정원			정비후정원	
	현	정비후	감	현	정비후	감	현	정비후	감	순인문	실업등
서울대학교	12	10	2	78	69	9	12,260	11,100	1,160	2,240	8,860
전북대학교	5	3	2	19	15	4	3,020	2,080	940	300	1,780
전남대학교	7	5	2	22	20	2	3,890	2,880	1,010	520	2,360 ◇ 600
경북대학교	5	4	1	30	21	9	3,890	2,620	1,270	540	2,080
부산대학교	8	7	1	29	23	6	6,040	4,900	1,140	220	4,680 ◇ 600
춘천농과대학	1	1		4	4		585	540	45		540
(폐지공주사대)	1		1	6		6	615		615		
합계	39	30	9	188	152	36	30,300	24,120	6,180	3,820	20,300 ◇ 1,200
										17%	83%

* ◇는 교육대학원
* 출처 : BA0085216, 464쪽

대학 정비는 1961년 5월부터 1963년 말까지 2년 반에 걸쳐 군정 특유의 강력한 행정력을 바탕으로 추진되었으나 급진적인 시책의 행정으로 적지 않은 시행착오와 부작용을 가져왔다. 대학의 운영을 정상화시키는 데 기여하지 못하고, 사범계 대학의 일부 학과 폐지로 인한 교원양성교육의 차질, 지방 대학의 특수 학과 폐지, 타율에 의한 대학, 학과, 정원의 감축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결국 1962년 말에 수정(안)이 나오게 되었고, 대부분의 대학은 대학 정비 이전의 상태로 복구되었다.

실업고등전문학교 설치계획(안)(제80회)

관리번호 : BG0000312
 쪽 수 : 15
 생산년도 : 1962
 생산기관 : 총무처

〈실업고등전문학교 설치계획(안)〉은 1962년 10월 4일 문교부 장관이 제출한 각의 부의 안건(의안번호 1772호)이다. 의결주문과 제안이유, 기타 참고사항에 이어 계획(안)으로 구성되었다.



【그림 4】 〈실업고등전문학교 설치계획(안)〉 표지 및 내용 (BG0000312, 65쪽, 69쪽)

1962년부터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추진되면서 이에 필요한 기술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수업연한 5년의 실업고등전문학교가 1963년에 개설되었다.

이 자료의 의결 주문은 “실업고등전문학교를 계획(안)에 의거하여 1963년부터 설치하기로 의결한다”로 밝혔고, 제안 이유는 “고도로 발달한 현대 산업이 요구하는 중견 기술자의 양성을 담당케 하여 경제발전 5개년 계획 수행과 산업현대화의 인적자원을

확보함에 있다”고 하였다.

실업고등전문학교의 제도를 마련하게 된 이유는 1. 현대 산업이 요구하는 기술공은 현행학제에 의한 고등학교의 수업연한으로는 부족하다, 2. 2년제의 초급대학제도는 다음과 같은 결함을 가지고 있다, (1)고등학교의 교육과정과 분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관련성(일관성)이 없다, (2)수업연한이 짧다, (3)시설이 부족하고 우수한 교수조직이 곤란하다, (4)초급대학의 교육내용과 교육방법이 4년제 대학과 동일시되었다, 3. 중견 기술공의 공급원이 확보되어야 한다, 4. 심신의 발달과정으로 보아 고등학교과정에서부터 직업교육을 실시함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제시하였다.

〈실업고등전문학교 설치계획(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목적은 전문적인 학술과 기능을 연마하여 직업에 필요한 능력을 육성하고,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수행에 필요한 기술요원을 양성하며 나아가 공업부문의 중견기술자의 공급원으로서의 역할을 담당케 하는 것이다. 학과는 공업, 농업, 수산에 관한 학과에 한하고, 학과의 종류는 기계과, 전기과, 화학과, 토목과, 건축과, 금속과, 농과, 임과, 농공과, 농화학과, 축산과, 어로과, 증식과, 제조과, 조선과로 한다. 당초 기계공학과, 농학과 등 ‘공학’ 또는 ‘학’이 포함되었던 학과 명칭에서 ‘공학’ 또는 ‘학’을 삭제한 흔적이 있는 것을 볼 때, 실업고등전문학교의 현장성을 강화하려는 의도가 보인다.

수업연한은 5년이며, 입학자격은 중학교 졸업자 또는 고등학교입학 자격 검정고시 합격자로 한다. 교직원인 교장, 교수, 부교수, 조교수, 조교, 사무직원을 두고, 신분은 초급대학에 준하며, 졸업자는 초급대학 졸업자와 동등자격을 인정하도록 하였다. 1963년에 공립으로 3개 공업학교를 설치하고, 관련 법령을 개정·제정하도록 하였으며, 1963년 예산 소요액을 2,508,450원으로 추산하였다.

실업고등전문학교는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졸업자를 자격자로 하고 졸업 후에는 대학에 편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5년이라는 수학 기간이 너무 길고 졸업자의 취학과 진학이 어려워 중도 탈락자가 많아 교육적 효과에 대한 반성이 일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1970년 실업고등전문학교는 초급대학인 전문학교로 개편되었고, 1979년에 전문대학으로 개편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대학학생정원령(안)(제106회)

관리번호 : BG0000472
 쪽 수 : 154
 생산년도 : 1965
 생산기관 : 총무처

「대학학생정원령(안)」은 1965년 12월 6일 문교부 장관이 제출한 의안(의안번호 제1105호)이다. 이 자료는 의결주문과 제안이유 등에 이어 관계법령(교육법시행령), 대학학생정원령(안), 별표(대학학생정원표)로 구성되었다. 「대학학생정원령」은 1965년 12월 22일 제정되어 1961년 1월 1일에 시행되었고, 수차례 개정을 거쳐 1998년에 폐지되었다.



【그림 5】 「대학학생 정원령(안)」 표지
(BG0000472, 473쪽)

대학학생 정원 정책은 인력 수급, 대학 입시, 대학의 규모 등을 통제하는 중요한 정책이다. 「대학학생정원령」이 제정되기 전까지는 대학 학생 정원은 학칙에 기재하도록 규정되어 있었고, 학과 설치와 함께 문교부의 인가를 받도록 되어 있었다. 사실상 대학 정원의 자유방임기였던 1961년까지 고등교육기관의 수는 4.5배, 학생 수는 12.9배 증가하였다.

대학생 정원에 대한 강력한 통제가 시작된 것은 「교육법시행령」을 개정하여 대학생 정원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학사와 석사학위를 문교부에 등록하며, 「대학학

생정원령」을 제정하여 1961년부터 시행한 후부터였다.

「대학학생정원령」의 제안 이유는 “교육법시행령 제6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초급대학을 포함한다)과 사범대학의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밝

히고 있다. 법령은 전문 3개 조항으로 되어 있다. 제1조(목적)는 대학과 사범대학의 학생 정원 규정, 제2조(학생정원)는 대학과 사범대학의 학생 정원을 대학정원, 학년별정원, 학과별정원으로 나누고 정원을 별표와 같이 한다. 위탁학생, 외국인학생, 교포학생의 인원수는 학생정원에서 제외한다. 대학원의 학생정원의 그 대학교 또는 대학정원의 10분의 1로 한다. 제3조(정원초과입학허가의 금지)는 정원을 초과하여 입학할 수 없다. 1969년부터 시행된 대학입학예비교사는 대학별 단독시험에서 야기될 수 있는 입학정원의 초과모집을 억제하는 기능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예비고사 실시 이후로 더욱 효과적으로 촉진될 수 있었다. 대학정원억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1970년대 후반에 대졸자의 공급 부족 현상을 가져왔고, 1979년부터 대입정원의 대폭적인 확대가 이루어졌다.

1960~1970년대 대학 학생 정원의 변화 추이는 【표 3】과 같다.

【표 3】 대학 입학 정원의 변화 추이(1961~1980년)

구분	1961	1965	1969	1973	1977	1979	1980
전체 증가지수	23,090 1.00	26,370 1.14	34,475 1.49	44,405 1.92	60,550 2.62	98,420 4.26	116,700 5.05
국립대 증가지수	8,935 1.00	6,100 0.68	8,415 0.94	11,570 1.29	17,225 1.93	28,500 3.19	33,303 3.73
사립대 증가지수	14,155 1.00	20,270 1.43	26,050 1.84	32,835 2.32	43,325 3.06	69,920 4.94	83,397 5.89

* 4년제 대학 기준, 1961년의 학생 수를 기준으로 증가지수 산출

* 출처 : 윤정일 외, 『한국교육정책의 탐구』, 교육과학사, 1996, 374쪽, 376쪽

「대학학생정원령」은 한 학교라도 신설·개편, 교명 변경이 있으면 개정되었다. 대학자율화방안 등 대학교육개혁방안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1997년에 「고등교육법」이 제정되면서 1998년 「고등교육법시행령」에 의해 「대학학생정원령」은 폐지되었다.

대학입학예비고사령

관리번호 : 1A00614175014996
 쪽 수 : 22
 생산년도 : 1968
 생산기관 : 법제처

「대학입학예비고사령」은 대학입학예비고사에 대해 규정한 법령으로, 1968년 11월 12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 제3637호로 1968년 11월 14일 제정되었고 같은 날 시행되었다. 이 자료는 공포한다는 글, 공포 결재 기안용지, 법률, 관보 게재 요청 글, 공포 통지 글로 구성되었다. 법령은 전문 19개 조항과 부칙으로 이루어졌고, 1981년에 「대학입학학력고사령」이 제정되면서 폐지되었다.



【그림 6】 <대학입학예비고사령> 표지 및 내용 (1A00614175014996, 45,914쪽, 45,925쪽)

광복 후 대학입학 전형제도는 대학별 단독시험기(1945~1953년)로 시작하여, 대학입학 국가연합고사와 대학별고사 병행기(1953년), 대학별 단독시험기(1955~1961년), 대학입학자격국가고사기(1962~1963년), 대학별 단독시험기(1964~1968년)를

거쳤다. 대학입학국가연합고사와 대학입학자격국가고사를 도입하였지만 1~2년에 그쳤고 대부분 대학별 단독시험으로 진행되었다.²⁾

대학별 단독시험이 실시되는 동안 일부 대학의 정원의 초과모집, 부정입학, 정원관리의 비효율성 등 여러 문제가 야기되었고, 문교부에서는 1962년에 도입하였던 대학입학자격국가고사를 보완하여 「교육법」을 개정하고 관계 법령을 제정하여 1969학년도 대학입학자부터 적용하였다.

법령은 전문 19개 조항과 부칙으로 이루어졌다. 제1조에서 “교육법 제11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능·체육학계의 학과의 범위와 대학입학예비고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였다. 고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문교부에 대학입학예비고사위원회를 두고, 고사실시계획에 관한 사항, 고사교과목·출제의 범위와 방법 및 채점기준에 관한 사항, 합격자의 사정에 관한 사항, 기타 고사의 실시에 관하여 문교부 장관이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였다. 고사는 선택형필기고사로 하며, 고사교과목은 「교육법시행령」 제118조에 규정된 교과 중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교부 장관이 정하도록 하였다.

대학입학예비고사는 초기에는 자격고사의 성격을 띠고 동 시험에 합격한 자에게만 대학별 본고사를 부여하는 역할을 했으나, 점차 입학전형에 동 시험의 점수가 반영되었다. 예비고사의 적용 대상은 4년제 대학과 교육대학이었고, 1979학년도에 전문대학도 포함되었다. 합격선은 1971년까지 대학입학 정원의 150%였고, 1972년과 1973년에는 180%, 1974년부터는 200%를 합격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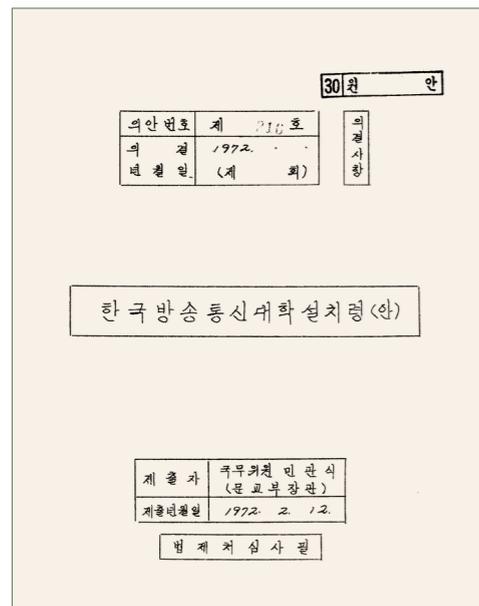
「대학입학예비고사령」은 수차례 개정을 거쳐, 1981년에 「대학입학학력고사령」이 제정되면서 폐지되었다. 1969년부터 시행된 대학입학예비고사는 대학입학 전형에서 국가 관리가 강화되고 평가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고, 대학별 단독시험에서 야기될 수 있는 입학정원의 초과모집을 억제하는 기능도 수행하였다.

2) 윤정일, 송기창, 조동섭, 김병주, 『한국 교육정책의 탐구』, 학지사, 1996, 254~263쪽

한국방송통신대학설치령(안)

관리번호 : BG0000764
 쪽 수 : 19
 생산년도 : 1972
 생산기관 : 총무처

「한국방송통신대학설치령(안)」은 1972년 2월 12일 국무회의 부의안건으로 제출되어 대통령령 제6106호로 1972년 3월 9일 제정되었고 같은 날 시행되었다. 이 자료는 국무회의 부의안건 제출문, 법령안으로 구성되었다.



【그림 7】 〈한국방송통신대학설치령(안)〉 표지 (BG0000764, 129쪽)

교육 수준의 증대와 전파 매체, 특히 라디오와 텔레비전의 보급이 대중화되자, 이의 교육적 활용을 위한 방송통신교육제도가 1968년 「교육법」의 개정(제114조의 2 신설, 법률 제2045호)으로 서울대학교에 방송통신대학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였다. 3년 간의 준비 작업 끝에 1972년 3월 「한국방송통신대학설치령」이 공포되었다.

제안 이유는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일실한 직장인·군인·가정주부들에게 교육기회를 부여하여 국민교육 수준의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가 발전에 기여하게 하고자 한국방송통신대학을 설치하려는 것

임”으로 밝혔다. 법률은 전문 22개 조항과 부칙으로 이루어졌다. 제1조에서 이 영은 「교육법」 제114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방송통신대학의 설치, 교육과정, 수업연한 및 자격과 기타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였다.

주요 내용은 ①서울대학교에 2년제 초급대학 과정으로 한국방송통신대학을 부설함, ②학과는 가정학과, 경영학과, 초등교육과, 농학과, 행정학과의 5개 학과로 함, ③학생입학정원은 12,000명 이내로 함, ④입학자격은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 함, ⑤통신대학 졸업자에게는 국가고사에 합격한 자에 한하여 4년제 대학에의 편입학 자격을 부여함 등이다.

1972년에 우리나라 최초의 원격고등교육기관으로서 한국방송통신대학이 개교하였다. 이후 10년 간 38,000여 명의 졸업생을 배출한 방송통신대학은 교육의 기회를 놓친 성인들에게 고등교육 기회 제공, 직장인의 학력과 자질 향상, 개방교육으로 전반적인 국민교육 수준 향상, 재수생 문제와 과열 과외 해소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였다고 평가되었다. 이에 1980년 7.30 교육개혁에서 방송통신대의 확충 방침이 포함되었고, 1981년부터 종래의 전문대학과정을 학사과정으로 개편하여 수업 연한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학생 정원도 18,000명에서 12,000명 증원하여 30,000명으로 확대하였다. 1982년에는 서울대학교로부터 분리하여 독립된 국립대학으로 독자적 운영을 시작하였다. 한국방송통신대학의 학생현황 변화 추이는 【표 4】와 같다.

【표 4】 한국방송통신대학의 학생현황 변화 추이(1980년대)

구분	1980	1982	1984	1986
학생 수	32,053	74,867	139,100	148,856
졸업생 수	4,583	5,610	889	11,892

* 출처 : 문교부, 『문교40년사』, 1988, 573쪽

이후 1991년에 5년제 학사과정에서 4년제 학사과정으로 개편되었고, 1993년 교명을 한국방송통신대학교로 개칭하였으며, 2001년 대학원을 개원하는 등의 변화가 있었다. 이후 다수의 원격대학, 사이버대학이 인가·설립되었지만, 국립은 방송통신대가 유일하다. 매체의 발전과 원격교육의 고도화를 바탕으로, 한국방송통신대학은 지금까지 국내 최대 규모의 국립 원격고등교육기관으로 운영되고 있다.

대학의 새마을교육 추진계획(문교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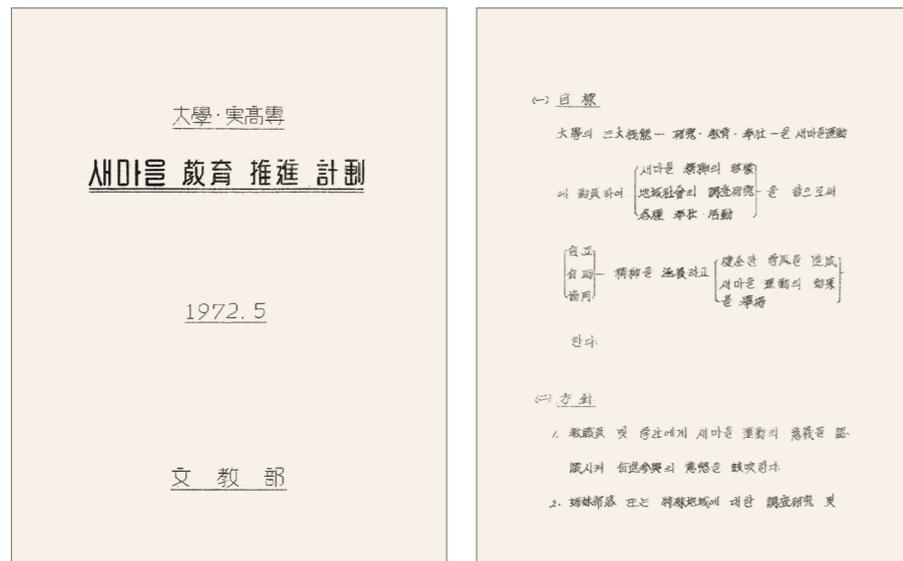
관리번호 : 1A00614174959198

쪽 수 : 25

생산년도 : 1972

생산기관 : 대통령비서실

〈대학의 새마을교육 추진계획〉은 대학(실업고등전문학교 포함)의 적극적인 새마을운동 참여를 촉구하기 위한 문교부의 계획으로, 1972년 5월 11일 대통령에게 보고되었다. 1972년 2월에 작성된 문교부의 계획은 목표, 방침, 현황, 문제점, 추진계획, 교수세미나 관련 자료로 구성되었다.



【그림 8】 〈대학의 새마을교육 추진계획〉 표지 및 내용 (1A00614174959198, 35,828쪽, 35,829쪽)

1970년부터 시작된 새마을운동은 ‘근면, 자조, 협동’이라는 구호 아래 낙후된 농촌 환경의 개선과 경제 발전을 위해 추진되었다. 〈대학의 새마을교육 추진계획〉은 초·중·고등학교에 비하여 부진한 추진실적을 보이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작성되었다. 대학(실업고등전문학교 포함)의 적극적인 새마을운동 참여를 촉구하기 위한 문교부의

계획으로, 1972년 5월 11일 대통령에게 보고되었다. 1972년 2월에 작성된 문교부의 계획은 목표, 방침, 현황, 문제점, 추진계획, 교수세미나 관련 자료로 구성되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계획의 목표는 대학의 삼대기능(연구, 교육, 봉사)을 새마을 운동에 동원하여 새마을 정신의 계몽, 지역사회의 조사연구, 각종 봉사활동을 함으로써 자립·자조·협동 정신을 양양하고 건전한 학풍을 조성, 새마을운동의 효과를 거양한다고 밝히고 있다. 구체적인 계획으로, 농과계 대학은 전 학생이 2개월 이상 농촌실습(2학점 이상) 필수 이수, 졸업 후 영농지도자를 희망하는 학생은 4개월 이상 농촌실습(4학점 이상) 이수, 사범계대학은 ‘학교와 지역사회’ 과목의 필수 이수, 교육대학은 1~2주 간 농촌학교 실습 의무화, 일반대학은 봉사활동을 선택과목으로 채택하도록 권장 등의 방안이 제시되었다. 또한 새마을교육을 위한 전국대학 교수협의회, 대학생 간부훈련을 개최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었다.

이러한 계획에는 일반대학의 참여의식이 부족하고(3월 말 기준 대학의 27.7%가 추진실적 없음), 일반 교수의 무관심 혹은 적극적 자세결여, 지원지역에 대한 조사 및 연구활동 소극성과 지도체제 미정비 등을 배경으로 제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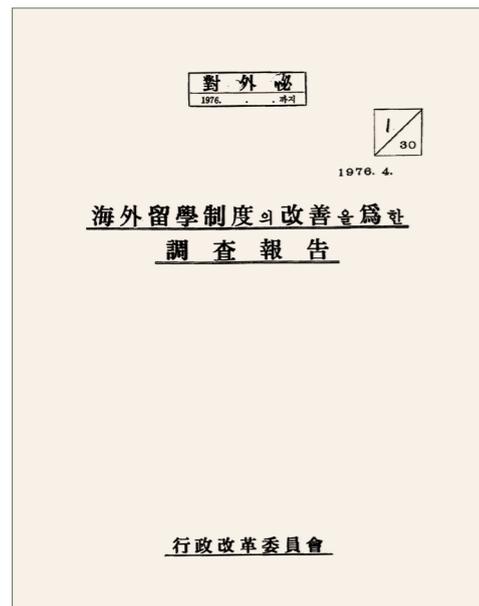
실제로 교원양성기관의 교직과목에 ‘학교와 지역사회’가 1975년 「교원자격검정령시행세칙」에 새롭게 포함되었고, 1983년에 제외되었다. 학교와 지역사회의 연계에 대한 관심은 1960년대 향토학교 운동에서 시작되었으나 새마을운동으로 인해 구체화되었고 이로 인해 정치적 성격을 갖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1970년대에 국가 주도형 지역개발운동으로 강력하게 추진되었던 새마을운동은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는 1980년부터 약화되었고 민간 중심의 운동으로 바뀌게 되었다. 각급 학교와 대학에서의 새마을교육 또한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되었다.

해외유학제도의 개선을 위한 조사보고

관리번호 : BA0177307
 쪽 수 : 42
 생산년도 : 1976
 생산기관 : 행정개혁위원회

〈해외유학제도의 개선을 위한 조사보고〉는 해외유학제도의 현행 제도와 개선방안에 대한 조사보고서로 행정개혁위원회에서 작성하여 1976년 5월 13일 발송한 문서다. 조사보고는 목적, 개황, 문제점 및 현황분석, 결론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5월 7일 문교부 장관, 과학기술처 장관 배석 하에 국무총리에게 건의하고 5월 12일 재가를 받아 국무총리가 문교부 장관에게 조치토록 하였음을 알리는 내용도 수록되어 있다.



【그림 9】 〈해외유학제도의 개선을 위한 조사보고〉 표지 (BA0177307, 70쪽)

해외 유학생에 대한 규정을 마련한 것은 1955년부터였는데, 당시는 어려운 외환 사정으로 인해 해외유학을 극히 제한하는 정책을 폈다. 1970년대에 들어와 외환 사정이 호전되면서 해외유학 제도를 확대할 수 있었고, 산업의 고도화에 따라 고급 인력이 크게 요구됨에 따라 자비나 해외장학금에 의존하던 해외 유학정책에서 벗어날 필요가 생겼다.

1976년 4월 행정개혁위원회에서 작성한 조사보고에서, 현행 해외유학제도가 법적 뒷받침의 미비, 시험제도의 불합리, 유학생에 대한 지도관리의 소홀 등 기본 시책

의 결여로 해외 유학의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향상과 당면

한 중요산업 부문의 진흥을 위해 해외두뇌 유치가 요망되나 이를 위한 제조건의 제약으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라고 분석하였다. 이에 해외유학의 국가적 이익과 과학기술 발전에 적극 기여하기 위하여 '국비유학제도'의 창설을 제안하였다.

국비유학제도의 창설은 “국가의 중요전략 산업부문 또는 국가에서 긴급히 필요로 하는 분야 등에 관한 학문과 기술의 발전보급을 위하여 우수한 자질의 인적자원을 배양 활용하기 위한 일환”으로 제안되었다. 대학 졸업자 이상으로 초기에는 20인 정도를 뽑아 전공과정 이수를 목표로 2~4년 한도로 하며, 국비유학자금은 정부에서 전액 부담하고 귀국 후 정부가 지정한 기관에서 일정기간 의무 복무하도록 제안하였다. 이 밖에 자비 유학생의 전형 제도, 해외유학생 지도관리 업무 강화, 귀국 유학생의 취업 알선, 해외유학에 대한 법령 제정 등을 제안하였다.

새로운 제도에 의한 국비유학생의 선발은 1977년부터 실시되었다. 3년 간 선발된 국비유학생의 수는 다음 【표 5】와 같다.

【표 5】 국비유학생 수(1977~1979년)

구분	공학계	이학계	외국어	교육	사회과학	수산해양	계
1977	10	0	2	0	0	0	12
1978	24	6	8	2	10	0	50
1979	51	12	6	5	14	1	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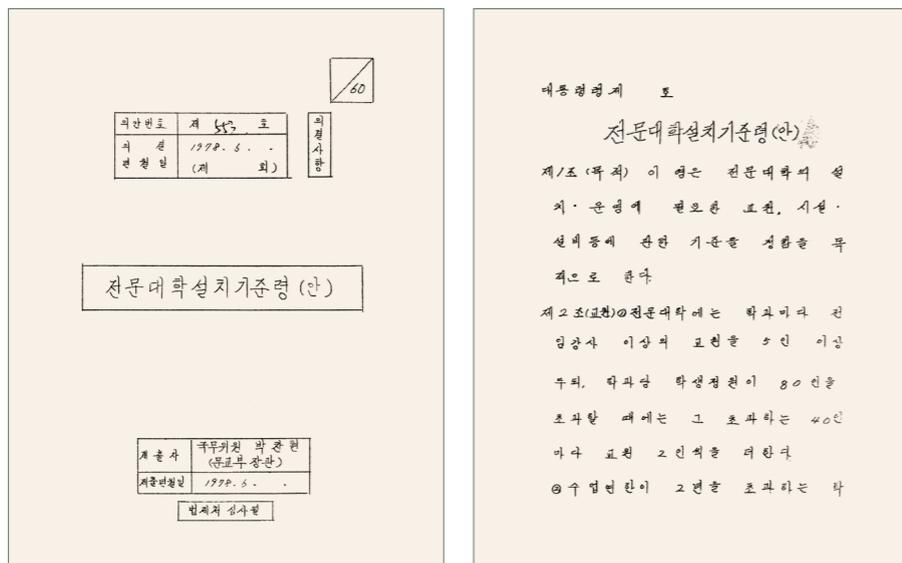
* 출처: 문교부, 『문교40년사』, 1988, 432쪽

이에 따라 1979년 9월 21일 「해외유학에 관한 규정」이 제정·공포되었고, 유학은 자비유학과 국비유학으로 구분되었다. 국비유학의 경우 국사, 국민윤리, 외국어 및 선발분야의 해당 전공과목을 시험과목으로 하여 합격자에게 유학 비용의 전액 또는 일부를 장학금으로 지급하며 유학 기간은 3년 이내(2년 연장 가능), 귀국 후 복무의무를 부과하였다. 대졸자에 한정되었던 해외유학 자격은 1981년에 중학교 재학 이상으로 확대되었고, 1983년 11월 22일에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의 개정을 통해 자비유학자격을 강화하고 국비연수제도가 신설되었다. 지금까지 자비유학, 국비유학, 국비연수의 틀 속에서 해외유학 정책이 운영되고 있다.

전문대학설치기준령(안)(제553호)

관리번호 : BA0084861
 쪽 수 : 22
 생산년도 : 1978
 생산기관 : 총무처

〈전문대학설치기준령(안)〉은 1978년 6월 21일 국무회의 부의안건으로 제출되어 대통령령 제9078호로 1978년 7월 4일 제정되고 1979년 1월 1일 시행되었다. 이 자료는 국무회의 부의안건 제출문, 〈전문대학설치기준령(안)〉으로 구성되었다. 「전문대학설치기준령」은 이후 수차례의 개정을 거쳐 1996년 「대학설립·운영규정」의 제정에 따라 폐지되었다.



【그림 10】 〈전문대학설치기준령(안)〉 표지 및 내용 (BA0084861, 320쪽, 323쪽)

전문대학의 전신은 1963년에 개설된 실업고등전문학교로, 1970년에 초급대학인 전문학교로 개편되었고, 1979년에 전문대학으로 개편되었다. 전문학교 개설 당시 26개교에서 1978년 112개교로 양적 성장은 대단했으나, 당시 전문학교의 입학자는 대학입학예비고사 불합격자도 허용되었으므로 학생들의 질이 낮고 전문학교를 낮춰보는

사회적 통념 때문에 질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이러한 문제점과 재수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종래의 초급대학과 전문학교를 전문대학으로 개편·일원화하였다. 수업 연한은 단기이지만 입학 자격을 강화하고 교육 내용을 전문화하는 한편, 실험실습 시설을 확충하는 등 대학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유능한 중견직업인 양성을 목적으로 새로 발족시켰다. 과거의 전문학교와 달리 설치 기준을 강화하고 대학입학예비고사 합격자를 입학 자격으로 하여, 일반 대학과 동일한 기준에 의거, 전형하며, 교육과정 이수 방법은 학점제로 전환하였다.

「전문대학설치기준령」은 전문 21개 조항과 부칙으로 이루어졌다. 제1조에서 전문대학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교원, 시설·설비 등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교원과 사무직원의 정수, 시설·설비의 기준, 설립인가 신청 시의 시설·설비기준, 전문대학평가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①학과마다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을 5인 이상 둬, ②교원의 교수시간은 1인당 매주 9시간을 기준으로 함, ③사무직원은 학생정원이 200인 이하인 경우 5인을 둬, ④교지, 교사, 체육장, 실험·실습·실기에 관한 시설·설비, 도서관 등의 기준을 명시함, ⑤문교부 장관의 자문에 응하여 전문대학의 교원, 시설·설비와 교육계획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교부에 전문대학평가위원회를 둘 등을 규정하였다.

전문대학의 변화 추이는 다음 【표 6】과 같다.

【표 6】 전문대학의 변화 추이(1980~1985년)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학교 수(교)	128	132	128	128	122	120
졸업 정원(명)	84,455	98,070	105,830	104,570	99,330	97,090
입학률(%)	95.7	94.9	93.0	95.5	104.9	111.7
취업률(%)	30.5	27.0	42.7	54.0	56.4	6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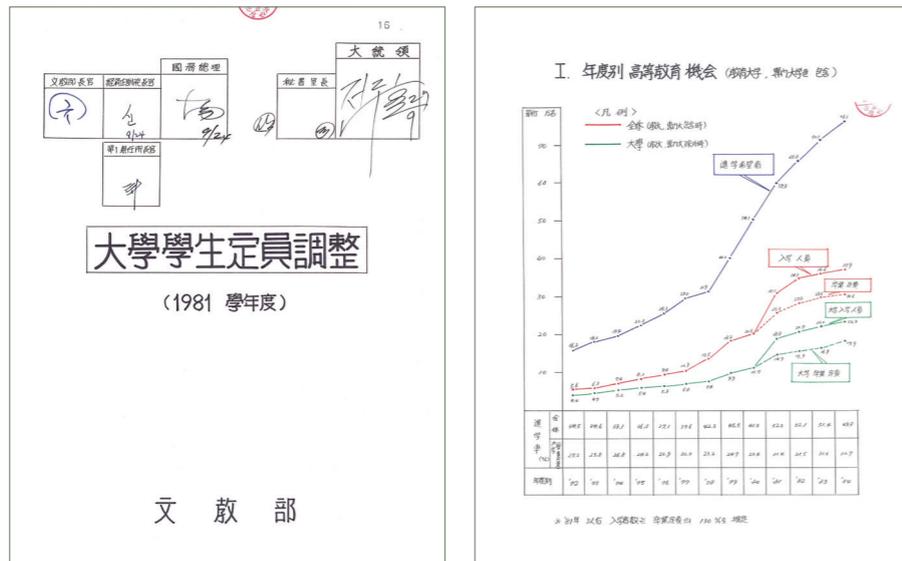
* 출처 : 문교부, 「문교40년사」, 1988, 554쪽

「전문대학설치기준령」은 「대학설치기준령」과 동일하게 1996년 「대학설립·운영규정」의 제정에 따라 폐지되었다. 고등직업교육기관으로서 전문대학 제도는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대학학생정원조정(1981학년도)

관리번호 : 1A00614174554892
 쪽 수 : 131
 생산년도 : 1980
 생산기관 : 문교부

〈대학학생정원조정(1981학년도)〉은 문교부에서 작성한 자료로, 문교부 장관의 결재인이 1980년 9월 27일로 찍혀 있다. 문서는 1. 연도별 고등교육의 기회 확대, 2. '84학년도 대학 졸업정원 조정원칙, 3. '84학년도 대학졸업정원 증원계획, 4. '84학년도 대학별 졸업정원 조정, 5. 조정결과 분석, 6. 참고자료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11】 〈대학학생정원조정〉 표지 및 내용 (1A00614174554892, 275쪽, 277쪽)

대학학생정원조정은 '졸업정원제'에 관한 문건으로,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산하 문교공보분과위원회에 의해 입안되어 취해진 1980년의 7.30 교육개혁 조치의 일환으로 행해졌다. 당시 주요 고등교육 정책은 졸업정원제, 전일수업제, 대학 입학인원 확대, 서울 소재 대학의 학생증원 허용 등 고등교육 기회의 확대와 관련된 정책이었다.

1980년에 발표된 졸업정원제에 대한 최초의 구체적인 문건은 이 자료인 〈대학학생정원조정(1981학년도)〉으로 보인다. 이 자료에서 연도별 고등교육 기회와 관련하여 제시한 통계는 【표 7】과 같다. 졸업정원제를 실시하는 이유를 고등교육 기회 확대로 본 것이다.

【표 7】 연도별 진학을 변화 추이 및 전망

(단위 : 만명, %)

구분	1972	1974	1976	1978	1980	1981	1982	1983	1984
대학 진학 희망자수	16.2	19.4	25.3	31.9	50.1	59.8	65.8	71.1	76.1
대학 입학인원	5.6	7.4	9.4	13.5	20.5	31.1	34.3	36.6	37.9
대학 졸업정원	4.4	5.2	5.8	7.3	11.7	25.2	27.8	29.6	30.6
대학 진학률	34.5	38.1	37.1	42.3	41.0	52.0	52.1	51.4	49.8

* 대학은 교대, 전문대 포함. 1981년 이후 입학자수는 졸업정원의 130%로 추정

* 출처 : 1A00614174554892, 275쪽

기본 방침에서 대학 입학정원제를 졸업정원제(현행 1980학년도 입학정원 → 1984학년도 졸업정원)로 전환하고 고등교육 기회를 대폭 확대, 1990년대 고도산업사회에 대비하여 전문기술직 및 행정·관리직 인력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부문별 부족분야를 중점 증원, 서울 소재 대학의 증원을 허용하고, 특히 교수 및 시설의 확보상황이 양호한 대학에 대폭 증원 등을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1984학년도 졸업정원은 1980학년도 입학정원에 1981학년도 순증을 반영하여 249,720명, 1981학년도 입학인원은 1980학년도 정원의 130%와 1981학년도 정원의 순증 130%를 반영하여 308,040명으로 계산하였다.

그러나 졸업정원제는 대학의 자율을 무시한 제도라는 비판과 함께, 대학별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일정 비율의 강제 모집과 강제 탈락의 폐단이 지적되면서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1981년 3월에 일률적으로 130% 모집, 100% 졸업, 연도별 강제탈락을 적용으로 시작되었던 졸업정원제는, 1983년 8월에 신입생 모집비율 및 학년별 탈락률의 자율화, 4학년 수료자에 대한 대학졸업자격고사 시행으로 추가 구제 등 1차 보완책이 마련되고, 1984년 4월에 신입생 모집비율의 완전 자율화로 2차 보완책이 마련되었다. 1986년 6월에는 110%라는 상한선을 없애는 등 1981년부터 7년 간

실시했던 졸업정원제를 1987년에 폐지하고 1988학년도부터 입학정원제로 환원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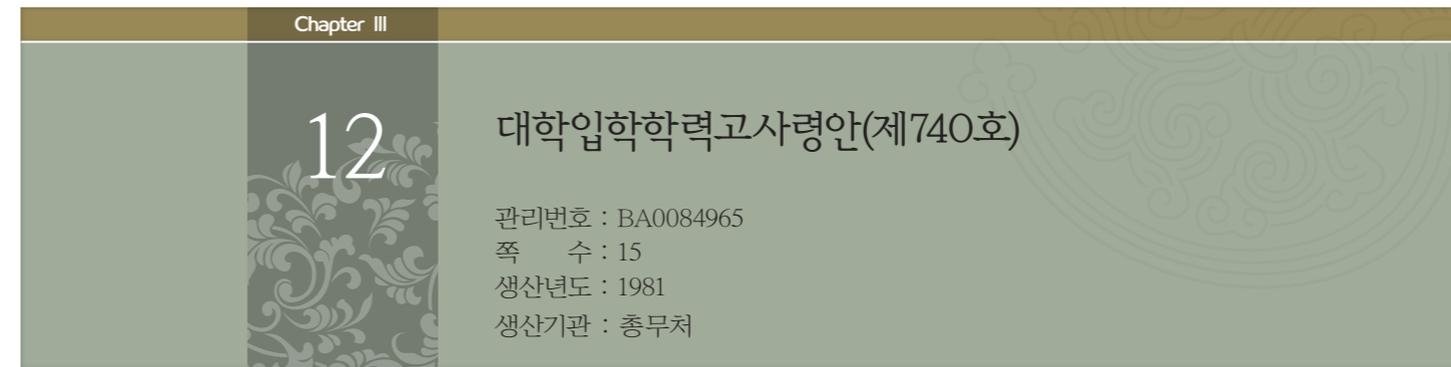
1980~1990년대 대학 입학 정원의 변화 추이는 다음 【표 8】과 같다. 1970년대 말, 1980년대 초에 급증한 대학 입학 정원은 1980년대에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다가 1990년대 들어 대폭 증가하였다.

【표 8】 대학 입학 정원의 변화 추이(1980~199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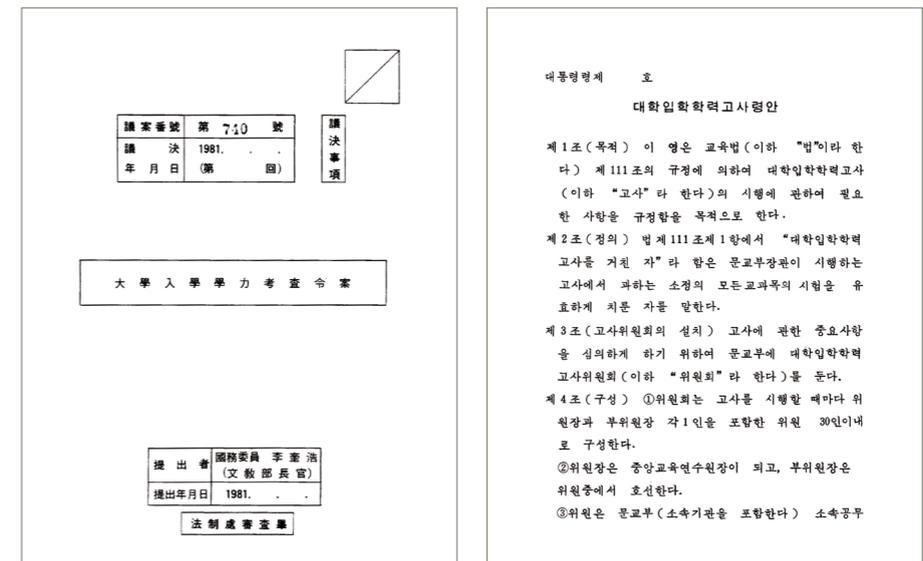
구분	1980	1981	1983	1985	1987	1989	1991	1995
전 체(명) 증가지수	116,700 5.05	187,218 8.11	202,483 8.77	203,899 8.83	196,501 8.51	192,319 8.33	202,070 8.50	250,230 10.84
국립대(명) 증가지수	33,303 3.73	51,414 5.75	54,420 6.09	50,041 5.60	46,998 5.26	46,790 5.24	49,040 5.27	59,255 6.63
사립대(명) 증가지수	83,397 5.89	135,804 9.59	148,063 10.46	153,858 10.87	149,503 10.28	145,529 10.28	153,030 10.53	190,975 13.49

* 4년제 대학 기준, 1961년의 학생 수를 기준으로 증가지수 산출
* 출처 : 윤정일 외, 「한국교육정책의 탐구」, 교육과학사, 1996, 376쪽

1981년부터 7년 간 입학정원제가 졸업정원제로 전환되었다가 다시 입학정원제로 환원되는 과정을 거쳤다. 졸업정원제는 고등교육기획의 확대와 입학생의 선별을 통한 면학 분위기 조성이라는 명분으로 추진되었지만, 당시 사회적 문제였던 재수생을 대학으로 흡수하는 대책으로 사용되었고 결과적으로 고등교육 진학률의 대폭 상승을 가져왔다. 초과 모집 인원의 중도 수료 문제로 인해 커다란 문제가 야기되었고, 30% 초과 인원의 등록금 수입은 사립대학의 재정확보에 도움을 주는 결과로 작용하였다.



〈대학입학학력고사령안〉은 1981년 7월 8일 문교부가 국무회의 부의안건으로 제출한 의안(의안번호 제740호)으로, 7월 13일 차관회의, 7월 14일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령 제10426호로 1981년 7월 30일 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었다. 이 자료는 국무회의 의안처리 전, 국무회의 부의안건 제출문, 차관회의 수정사항, 법령안으로 구성되었다. 「대학입학학력고사령」은 차관회의에서 안 제5조제2호 중 “고사문제의 출제범위의”를 “고사교과목, 고사문제의 출제범위 및”으로 수정의결하였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그림 12】 〈대학입학학력고사령안〉 표지 및 내용 (BA0084965, 9쪽, 12쪽)

대학입학 전형에서 대학입학학력고사는 대학입학예비고사에 이어 1982년에 도입되어 대학수학능력시험이 1994년에 도입될 때까지 유지되었다. 대학입학학력고사로 개

편된 배경은, 대학입학예비고사에 대부분의 학생들이 합격하여 그 의미를 상실하고 1980년에 본고사가 폐지되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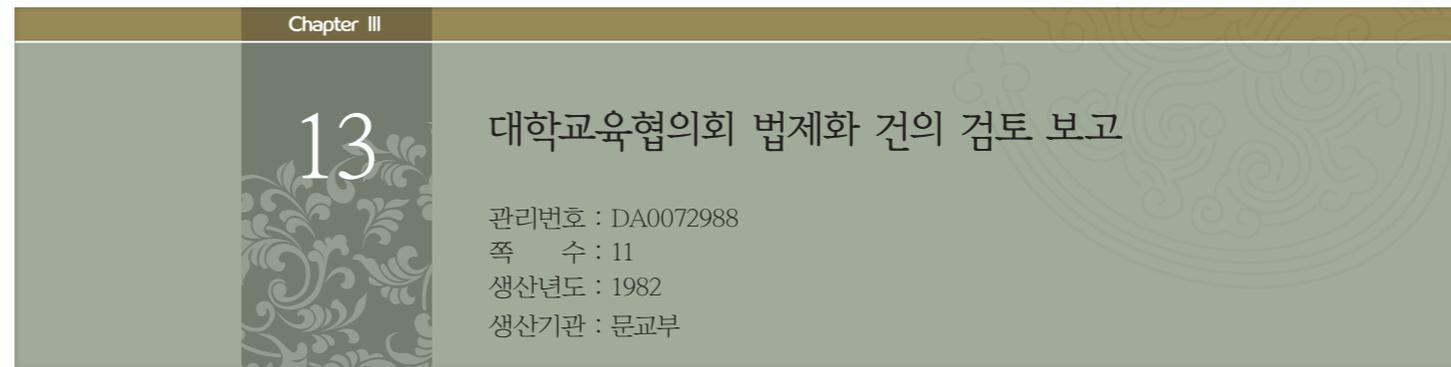
「대학입학학력고사령」의 제안 이유는 “교육법의 개정으로 종전의 대학입학예비고사가 대학입학학력고사로 개편됨에 따라 동학력고사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밝혔다. 법령은 전문 제21개 조항과 부칙으로 이루어졌다.

법령의 주요 내용은 ①고사시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교부에 대학입학학력고사위원회를 설치함, ②고사위원회는 위원장(중앙교육연수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30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함, ③고사의 방법은 선택형 필기고사로 하되, 체육교과에 대한 고사는 체력검사에 의할 수 있도록 함, ④고사의 교과목은 「교육법시행령」 제112조에 규정된 교과 중에서 문교부 장관이 정하도록 함, ⑤고사 실시 공고 및 응시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 ⑥고사에 있어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5년의 범위 안에서 고사의 응시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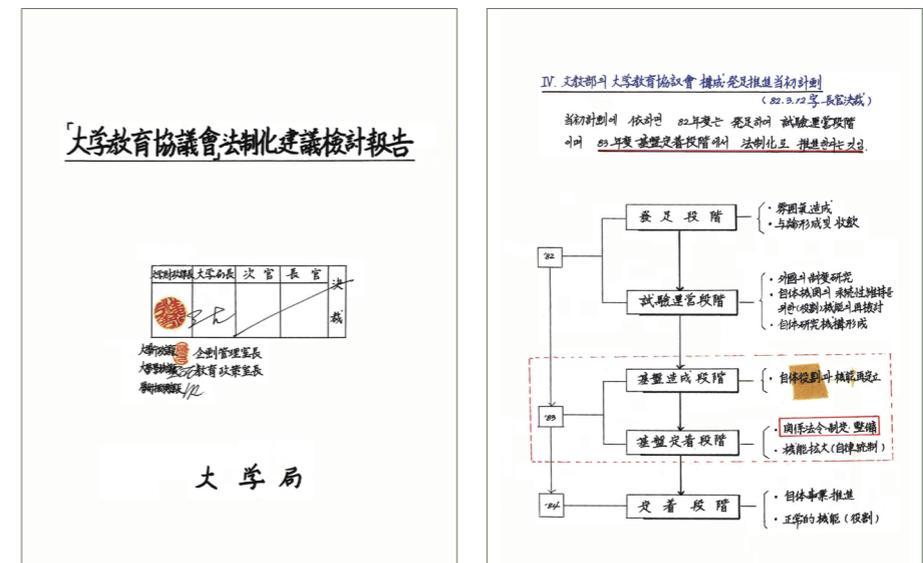
대학입학학력고사가 도입됨에 따라 대학입학 전형은 고교내신 병행기(1982~1985년), 고교내신 및 논술고사 병행기(1986~1987년), 고교내신 및 면접 병행기(1988~1993년)로 변화되었다.³⁾ 1998년부터는 각 대학에서 대학입학학력고사를 실시하는 대학별입시제도로 전환하면서 「대학입학학력고사령」을 폐지하고 「교육법시행령」에 관련 사항을 규정하게 되었다. 대학의 학생선발에 대한 자율성을 높이고 입학대상자가 적성에 맞는 대학진학을 할 수 있도록 대학별입시제도로 전환하여 대학입학학력고사를 각 대학에서 실시하도록 하되 학력고사의 문제는 고등학교 교육의 정상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교육평가전문기관인 중앙교육평가원에서 출제하도록 하였다.

대학입학학력고사와 고교내신 성적을 근간으로 대입 전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노력이 진행되었다. 그러나 국가가 관리하는 대학입학학력고사가 대학의 필요와는 거리가 있고 고차원적인 정신능력의 측정에 미흡하며 암기중심의 입시위주 교육을 유발한다는 비판이 계속되었다. 이에 1994년부터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도입되었고 대학입학학력고사는 폐지되었다.

3) 윤정일, 송기창, 조동섭, 김병주, 『한국 교육정책의 탐구』, 학지사, 1996, 265~272쪽



〈대학교육협의회 법제화 건의 검토 보고〉는 문교부 대학국 대학재정과 의 보고문서로 대학교육협의회가 문교부 장관에게 제출한 ‘대학교육협의회 의 법제화를 위한 자료제출’에 대한 검토자료다. 이 자료는 건의 요지, 현행 정관상 목적사업과 82학년도 문교부 업무위탁 내용, 법제화에 앞서 검토되어야 할 관련 주요 문제점, 문교부의 대학교육협의회 구성·발족 추진 당초계획, 검토결과 종합적 의견으로 구성되었다.



【그림 13】〈대학교육협의회 법제화 건의 검토 보고〉 표지 및 내용 (DA0072988, 1쪽, 10쪽)

전국 97개 4년제 대학의 총·학장을 회원으로 하는 대학교육협의회가 1982년 4월 2일 발족하였다. 1982년 7월 20일 대학교육협의회는 문교부 장관에게 ‘대학교육협의회 의 법제화를 위한 자료제출’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내어 대학교육협의회 의 법제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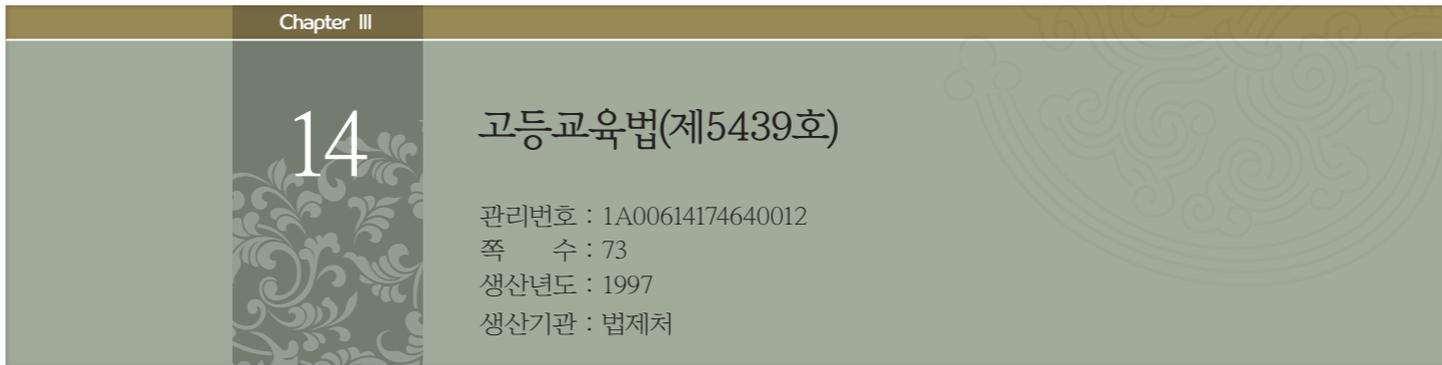
추진계획(안)을 송부하였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학교육협의회는 당시 임의단체로 기관존립의 법적 근거 마련을 요청하면서 대학교육협의회지원육성법(안)을 제안하였다. 이에 대하여 이 자료에서는 법안의 조항에 대한 검토의견과 정관 상 목적사업과 교육부 위탁사업의 비교표, 예상되는 문제점을 정리하였다. 그리고 당초 계획(1982년 3월 12일자 장관결재)에서 1982년은 발족 및 시험운영, 1983년은 기반조성 및 기반정착(관계법령 제정·정비 포함), 1984년 정착으로 되어 있음을 상기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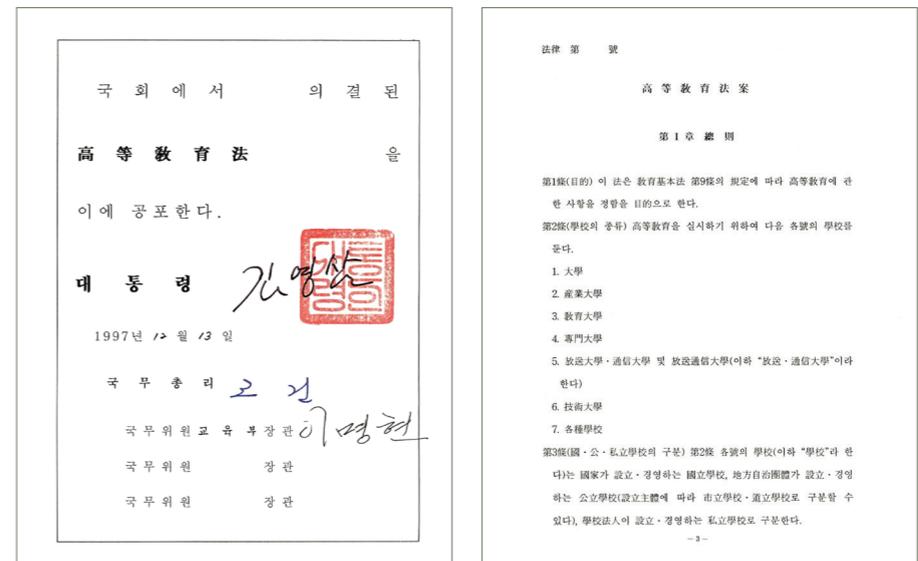
검토결과 종합적 의견은 “대학교육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법제화 시기는 국내외 동향과 제도는 물론, 운영성과를 보아 신중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충분히 연구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므로 당초방침대로 83학년도에 추진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82학년도는 우선 ‘사단법인체’로 발족)”이라고 밝히고 있다.

대학교육협의회는 1982년 10월 8일 공익사단법인체로 출발하였고, 이후 1984년 4월 10일 공포된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법률 제3727호)에 의해 법제화되었다. 대학교육협의회는 대학운영의 자주성을 높이고 공공성을 양양하며 대학의 상호협조를 통하여 대학교육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대학의 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연구개발, 대학의 학생선발제도에 관한 연구개발, 대학의 재정지원책 및 그 조성방안, 대학의 교육과정 및 교수방법의 연구개발과 보급, 대학의 평가, 대학 교·직원의 연수, 문교부 장관이 위탁하는 사업의 수행, 기타 대학상호 간의 협동에 관한 업무의 시행의 기능을 수행할 것이 규정되었다.

대학교육협의회는 우리나라의 유일한 대학 간 협의체로, 학과평가와 대학평가인정제 등 자율적인 대학평가의 모델을 만들어 갔다. 4년제 대학 간 협의체에 이어 전문대학 간 협의체인 전문대학협의회가 발족된 후 1995년에는 「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법률 제 5070호)도 제정되어 대학교육협의회와 비슷한 형태로 조직되었다.



「고등교육법」은 1997년 11월 29일 국회로부터 이송되어 12월 2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법률 제5439호로 1997년 12월 13일 제정되었고 1998년 3월 1일 시행되었다. 이 자료는 공포한다는 글, 공포 결재 기안용지, 법안, 관보 게재 요청 글, 공포 통지 글, 참고 사항으로 구성되었다.



【그림 14】 <고등교육법> 표지 및 내용 (1A00614174640012, 416쪽, 419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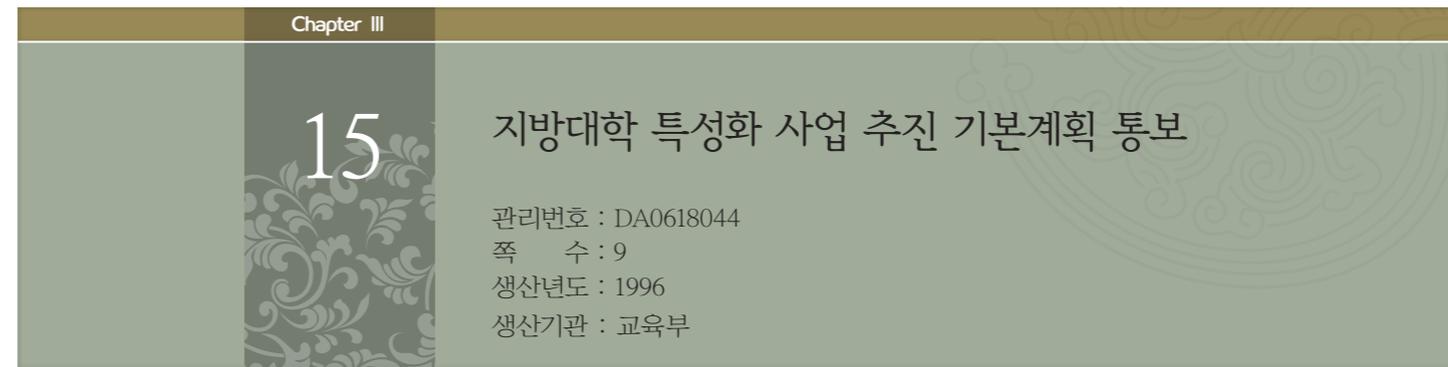
1997년에 50년 가까이 유지되었던 「교육법」이 폐지되면서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과 함께 「고등교육법」이 제정되었다. 「고등교육법」의 제정 이유는 “교육법의 전면적인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그동안 확정·발표된 교육개혁방안에서 고등교육분야에 관하여 국민에게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확대하고 대학의 자율성신장과 질

적 수준의 향상을 지향하는 많은 방안들이 발표·시행됨에 따라 이의 제도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교육개혁방안의 제도화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으로 밝히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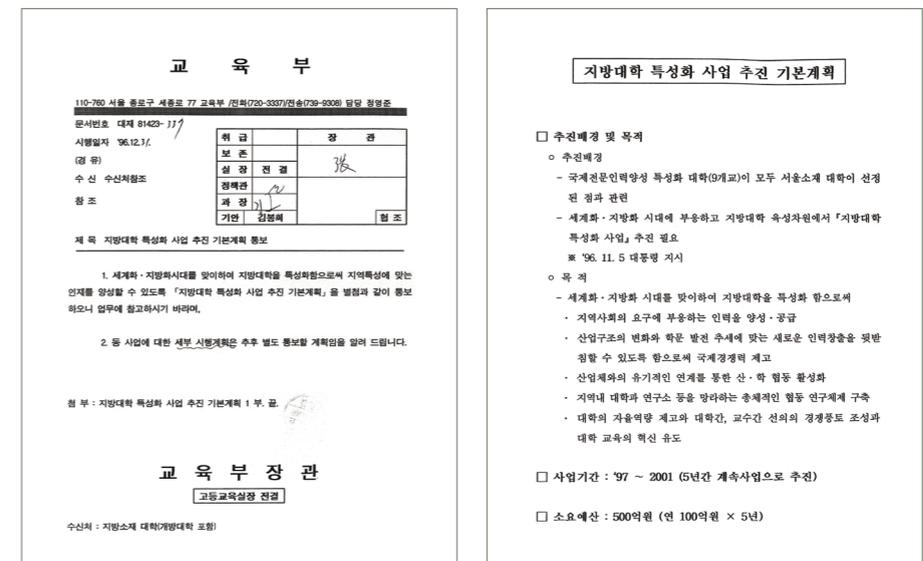
법률은 4장(총칙, 학생과 교직원, 학교, 보칙 및 벌칙) 전문 64개 조항과 부칙 12개 조항으로 구성되었다. 제1조에서 이 법은 「교육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고등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제2조에서 고등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의 종류를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통신대학 및 방송통신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로 규정하였다.

주요 내용은 ①종래의 개방대학을 산업대학으로, 방송통신대학을 방송대학·통신대학 및 방송통신대학으로 그 명칭을 변경함, ②학교의 장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학교규칙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함, ③학생의 자치활동을 보장하는 한편, 학생을 징계하고자 하는 때에는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치도록 함, ④고등교육기관의 교원자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겸임교원·명예교수 및 시간강사 등을 둘 수 있도록 함, ⑤고등교육기관의 수업과 산업현장과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현장실습수업 및 실습학기제를 도입하고, 국내·외의 다른 학교에서 취득한 학점을 당해 학교에서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함, ⑥전문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대학·산업대학 또는 방송대학 등에 편입학할 수 있도록 함, ⑦대학 및 전문대학에 준하는 각종학교 중 교육부 장관의 학력인정의 지정을 받은 각종학교의 졸업자에 대하여도 학위를 수여할 수 있도록 함 등이다.

「고등교육법」에서 규정하는 고등교육기관의 종류에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과 함께 사이버대학이 2008년에 추가되면서 이를 원격대학으로 통칭하였고, 2009년에는 학교의 종류를 구분하지 않고 학교의 장으로 총장 또는 학장을 둘 수 있도록 하였다. 「고등교육법」은 같은 시기에 제정된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과 함께 우리나라 교육의 근간이 되고 있으며, 고등교육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법률로 존재하고 있다.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 추진 기본계획 통보〉는 1996년 12월 31일 교육부 장관(고등교육실장 전결)이 지방소재 대학(개방대학 포함)을 수신처로 발송한 문서다. 첨부한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 추진 기본계획(안)은 사업개요, 추진방식 및 절차, 지원분야 및 지원대상 대학 검토, 평가항목, 기타사항, 조치계획으로 구성되었다.



【그림 15】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 추진 기본계획 통보〉 표지 및 내용 (DA0618044, 188쪽, 189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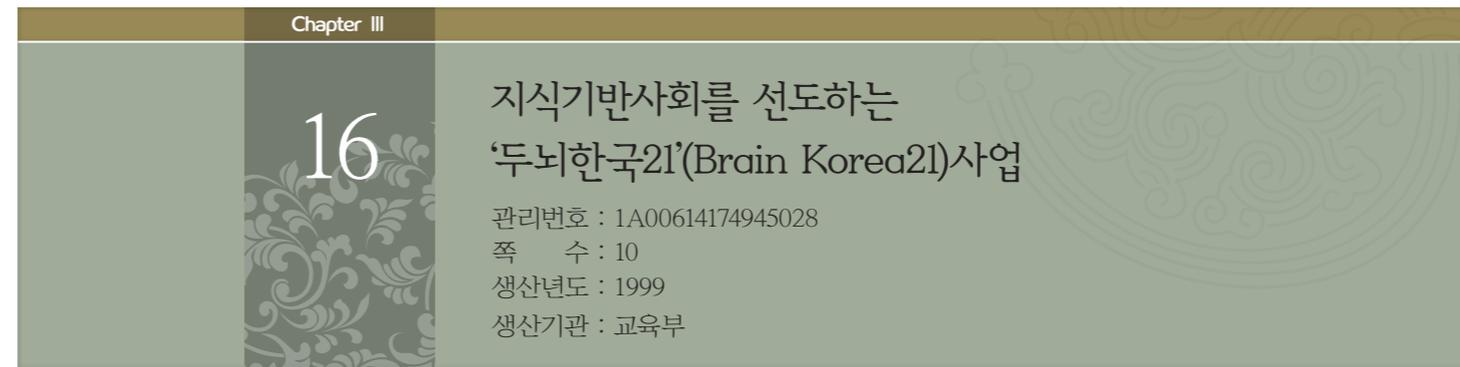
특성화 대학과 관련된 고등교육 정책은 국가의 제한된 교육재정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면서 대학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1974년에 처음으로 시작되었다. ‘지방대학 특성화’라는 이름으로 당시 서울을 제외한 각 지역의 농학계 19학과, 공학계 25개 학과, 수산계 3개 학과, 해양학계 2개 학과, 항공학계 2개 학과들이 대상이었다.

그리고 지방 국립대 특성화 공과대학 추진사업이 1976년부터 1981년까지 실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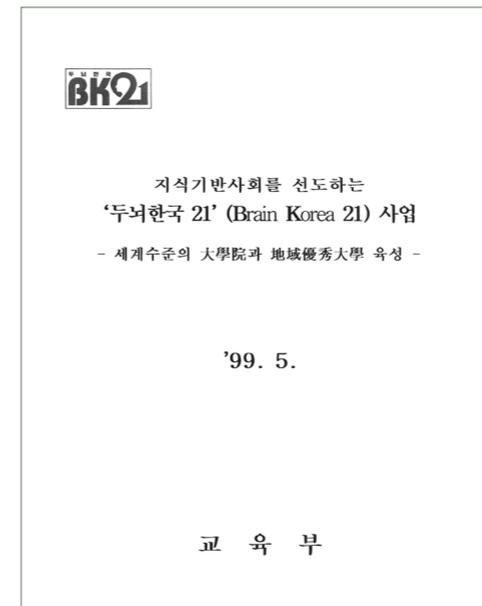
1997년에 새롭게 지방대학 특성화를 위한 재정지원이 이루어졌다.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은 1996년 국제전문인력양성 특성화 대학(9개교)이 모두 서울소재 대학이 선정된 점과 관련하여 세계화·지방화 시대에 부응하고 지방대학 육성차원에서 1996년 11월 5일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추진되었다.

기본계획(안)에 의하면,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의 기간은 1997년부터 2001년으로 5년간 계속사업으로 추진되고, 총 500억 원(연 100억 원)이 소요예산이었다. 지원대상 특성화 분야(학부 중심)는 1997년 1월 중에 결정하여 별도 통보하며,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10개 대학 정도를 선정하고자 하였다. 평가항목(안)은 이 사업에 대한 이해정도, 교육·연구여건 및 실적, 추진계획의 실현가능성, 국가발전에의 기여도로 밝혔다.

1997년에 사업 예산은 연 200억 원 규모로 증가하였고, 1997년 11월 13일 교육부는 부산대, 한림대, 강원대 등 지방대학 28개교를 특성화대학으로 선정하여 총 180억 원을 지원한다고 발표하였다. 국제전문인력 양성, 공학, 기초과학, 대학 자유응모분야 등 4개 분야에 101개 대학의 신청을 받아 결정되었다. 이 사업은 계획대로 5년 만에 종료되었고, 이어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지역균형발전의 일환으로 ‘지방대학 혁신역량강화사업(NURI)’이 추진되었고, 2014년부터는 ‘대학 특성화 사업(CK)’으로 전국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지식기반사회를 선도하는 ‘두뇌한국21’(Brain Korea21)사업〉은 1999년 5월 교육부가 작성한 문서다. 이 자료는 세계수준의 대학원 육성, 지역우수대학 중점 육성, 사업추진 관련 주요 사항, 사업전망, 건의사항으로 구성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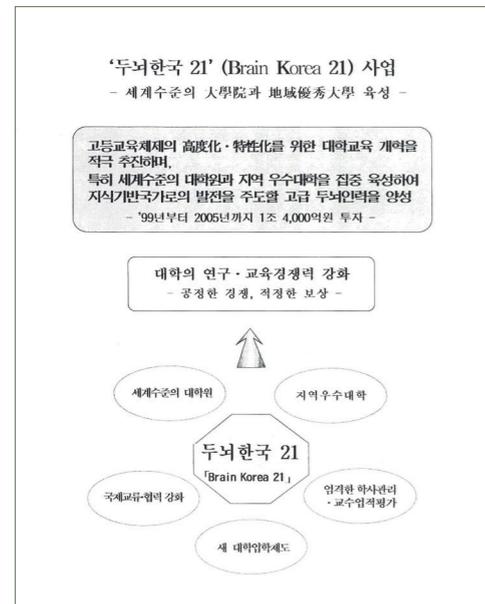


【그림 16】 〈지식기반사회를 선도하는 ‘두뇌한국21’(Brain Korea21)사업〉 표지 (DA0139668, 1쪽)

대학원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1995년부터 1999년까지 이공계 우수 대학원 중점지원사업이 실시되었다. 1999년에는 ‘두뇌한국 21’사업이라는 이름으로 대학원 육성 사업이 새롭게 추진되었다.

BK21은 세계 수준의 대학원과 지역우수대학을 육성하기 위한 교육부의 프로젝트로 진행되었다. 국제적인 비교우위 확보가 가능한 과학기술, 전략분야 등에 경쟁력을 갖춘 일부 대학원을 육성해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산업수요와 연계해 특성화된 우수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지역우수대학을 키우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였다. 다른 한편으로는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 한국을 주도할 재능과 실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고, 일류대와 인기학과 중심의 대입경쟁 대신 초·중등교육의 정상화를 꾀하려는 것에도 목적을 두었다.



【그림 17】 BK21 사업의 목표 (DA0139668, 2쪽)

1999~2005년까지 실시된 1단계 BK21 사업에는 모두 1조 5,700억 원이 투입됐다. 두뇌한국21은 과학기술분야, 인문사회분야, 지역대학 육성, 특화분야, 핵심분야로 구분하여 사업단을 선정한 후 지원하였다. 사업단 선정은 ‘서면 심사 → 사업단설명회 → 해외자문단 평가’ 등 3단계 과정을 거쳤다. 연간 900억 원은 과학기술분야 대학원 중심대학 집중 육성 사업, 100억 원은 인문사회 육성사업, 500억 원은 지역 중심대학 육성사업, 500억 원은 대학원 전용시설 구축사업에 각각 투입되었다. 그리고 이와 별도로 교육인적자

원부는 한국학술진흥재단의 학술연구비 중 연간 495억 원을 투입, 신산업분야 전문대학원 육성사업(150억 원)과 학문 전분야를 대상으로 한 핵심사업(345억 원)을 각각 지원했다.

그러나 사업이 시작된 후 BK21 사업단 선정 과정에서의 부정과 특정 대학에 집중적인 특혜, 선정된 사업단들의 실적 부진, 지원비 남용 등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한다는 지적과 함께 사업 초기에 우려했던 대학 간 서열화 심화, 학문 간 불균형 초래, 지방대학 죽이기, 사업의 줄속 추진 등 문제점이 드러났다. 교육인적자원부가 2005년 12월 발표한 1단계 BK21 사업 성과 보고에 따르면, BK21 참여 교수의 1인당 SCI(과학기술 논문 인용색인)급 논문 수가 BK21 비참여 교수에 비해 10배 이상 높아졌고, 연구 중심대학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특성화를 통한 지방대의 성공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BK21은 1단계(1999~2005년)와 2단계(2006~2012년)로 나누어 단계별로 각각 1조 3000억 원, 2조 3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 거대한 규모의 국가적 교육정책으로 진행되었다. 이후 정부는 BK21과 WCU(세계수준 연구중심대학) 정책을 잇는 초대형 대학지원프로그램인 BK21+ 프로젝트를 수립하여 2013년부터 2019년까지 7년 간 진행하고 있다.

